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2가단2498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원고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

담당변호사 이동주

피 고 1. E

2. F

변 론 종 결 2022. 9. 20.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13.부터 2022. 2. 23.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서명,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별다른 입증이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호

별지